

# 주식회사 씨티케이

## 약관

### 1. 계약의 성립

- 1.1 본 약관(이하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거나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아래에 정의된 대로) 제공하는 견적, 제안, 견적서 또는 수수료 견적서(이하 "**견적**")와 함께 여기에 언급된 서비스를 고객(이하 "**고객**")에게 제공하는 Element Materials Technology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씨티케이(이하 "**회사**")가 수행하는 시험, 교정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 1.2 본 약관은 고객의 구매주문서, 견적수락서 또는 명세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모든 약관보다 우선하며, 회사의 주문확인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일치하지 않는 모든 약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암시되는 법률(해당 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무역 관습, 관행 또는 거래과정보다 우선합니다. "**포함하여**", "**포함**", "**특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에 의해 도입된 문구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용어 앞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1.3 서면 및 구두 견적의 유효기한은 견적일로부터 30 일이며, 회사는 언제든지 해당 견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견적은 누구와도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 1.4 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계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1.4 고객의 구매 주문 또는 견적 수락은 고객이 본 약관의 견적에 명시된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제의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공급 및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 수립된 경우, 고객이 제시하는 모든 제의는 회사 또는 (시기가 더 이른 경우)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회사가 서면으로 승인하고 이행하지 않는 한 수락되지 않습니다.
- 1.5 아래 2.1 항에 따라 본 약관의 변경에 회사가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구매주문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서에 대한 그 어떤 수락 또는 인정(서면으로 회사가 서명한 경우도 포함)도 본 약관과 상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고객의 구매주문서 또는 기타 모든 문서의 조항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6 고객이 회사의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해 물품(이하 "**시료**")을 회사에 전달하거나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회사에 요청된 사항을 이행하는 행위는 회사가 해당 시료 또는 요청을 수락하는 즉시 (1.4 항에 언급된) "제의"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해당 시료에 대한 시험, 교정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회사가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됩니다. 본 약관은 해당 계약에 적용됩니다.

### 2. 취소, 연기, 수정을 포함한 변경

- 2.1 당사자 쌍방은 약관에 대한 변경 또는 권리 포기를 서면으로 표명하고 회사의 임원 또는 수권서명인이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변경 또는 권리포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약관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변경 또는 권리 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2.2 고객은 모든 주문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든지 취소, 연기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1) 해당 주문과 관련된 보수 전액(3.1 항에 정의), (2) 취소, 연기 또는 수정일 이전에 회사에 발생한 해당 주문과 관련한 모든 비용(3.1 항에 정의), 그리고 (3) 취소, 연기 또는 수정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기타 모든 손실, 경비 및 비용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 2.3 최초 견적을 제공한 이후에 계약과 관련된 문서, 명세서 또는 기타 자료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견적에서 예상하지 않은 추가 서비스가

요청되는 경우(예: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한 세부 절차에 대한 서면 설명서 작성) 회사는 모든 견적 가격을 검토하고 수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 3. 가격 및 지급

- 3.1 고객은 해당하는 경우 견적에 명시된 금액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타 방식으로 명시된 금액(이하 "**보수**")을 회사에 지급하며, 달리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이하 "**비용**")를 요청 시 회사에 지급합니다.
- 3.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3.2.1 서비스 완료 시 발행
  - 3.2.2 회사에서 합당하게 만족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개별 부분 완료 시 발행(이 경우 회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 총액 중 해당 비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 3.2.3 견적(견적 내 개별 행 포함) 또는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기타 방식으로 발행
- 3.3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보수 및 비용 전액을 공제 또는 상계 없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고객이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는 세액 공제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세액 공제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은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그러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 이후에도 회사가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않았을 때 수령했을 보수 및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합니다.
- 3.4 고객은 회사의 견적서, 제안서 또는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통화로 된 인출 가능 자금으로 전자은행이체를 통하여 보수 및 비용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회사에 지급할 모든 대금은 고객이 제 3 자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시된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행하는 변호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가 전문가 또는 전문가 증인 역할을 하는 데 따른 수수료의 지급도 포함됩니다.
- 3.5 지급이 30 일 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을 위한 모든 추가 서비스의 수행을 중지하고, (4.2 항에 정의된) 보고서의 제공을 보류하고, 신용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 계약조건이나 가격, 서비스 수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에는 수시로 이자가 부과되며, 이자는 세금계산서의 지급일로부터 해당 금액의 전액 수령일까지 연 6%로 계산됩니다.
- 3.6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유지하거나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당사자 쌍방이나 그 그룹사 사이의 기타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사**"는 한 기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 해당 기업의 모든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그리고 해당 기업의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 3.7 고객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그리고 서비스 완료 이후 6 개월 동안 다음을 수행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 3.7.1 고객의 구매주문서 일자와 견적 일자 중 이른 날짜 바로 직전의 12 개월 동안 계약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과 거래한 회사의 직원을 영입 또는 유인(또는 그러하도록 누군가를 조력)

3.7.2 3.7.1 항에 언급된 모든 인력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고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인력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여

상기 약속은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접촉을 받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 고객이 게재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게재된 광고에 응답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위반으로 인하여 3.7.1 항에 언급된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인력의 퇴사 이전에 회사에서 지급한 연간 보수 패키지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청에 따라 회사에 지급합니다. 고객은 본 조항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임을 확인합니다.

#### 4. 서비스

4.1 본 4 조의 나머지 조항에 따라 회사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도록 만족스럽고 정밀하게 서비스를 완료할 것을 보증합니다.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결과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소규모 시험 및 이론연구에 기반을 둔 결과의 경우 양산 규모로 추정하려면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2 회사는 서비스를 완료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서면 정보, 결과, 기술 보고서, 인증서, 시험 또는 검사 기록, 도면, 권고사항, 자문 등(이하 “보고서”) 또는 그에 대한 인증서를 고객이 합리적으로 서면 요청한 일자까지 고객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단, 회사는 (i)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의 모든 지연 또는 (ii) 그러한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3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완료해야 하는 회사의 의무는 수시로 시행될 수 있는 모든 관련 법률 또는 기타 규제 준수에 요구되는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4.4 어떠한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도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 또는 진술을 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기타 책임을 질 권한이 없습니다. 단, 해당 보증, 진술 또는 책임 적용이 2.1 항에 따라 고객에게 주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5 서비스 수행의 일환으로 전달 또는 해석된 방사선 촬영 보고서 및 필름과 관련하여, 고객은 방사선 촬영의 품질 또는 결과의 해석에 대한 고객 또는 제 3 자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해당 방사선 촬영 보고서 및 필름의 발행일로부터 14 일 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한 방사선 촬영 보고서 및 필름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해석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6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이행을 목적으로 회사에 제공한 모든 문서 및 정보의 제공 당시 및 이후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회사에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4.7 회사는 견적서에서 구체적으로 식별된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시험 품목이 견적서에서 식별되지 않은 기타 사양 또는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되었거나 이를 준수한다는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4.8 보고서는 서비스 수행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발행됩니다. 회사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고객과 그 임직원의 효과적 협력 및 회사에 제출된 정보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모든 보고서는 다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됩니다.

4.8.1 고객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4.8.2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진술도 어떤 상황에서든 진술, 약속, 보증 또는 계약조건이 되거나 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8.3 보고서는 오로지 각각의 개별 계약에 대해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전문적 분석을 통해 판단되며, 결과에 대한 회사의 모든 예측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4.8.4 회사는 보고서에서 도출한 결과 또는 결론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4.8.5 서비스의 결과는 오로지 제출된 품목 및 정보만을 다루어야 하며, 제출된 시료의 대형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8.6 결과는 최종적이며 회사가 승인한 것입니다. 고객이 승인되지 않은 예비 결과 또는 자문을 바탕으로 행동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5. 고객의 자산

5.1 고객은 효율적인 서비스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 및 서비스 요건에 대한 고유 구매주문서 번호, 참조 또는 인가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고객이 자산 중 특정 품목의 처리 및 취급에 대한 상세 서면 지시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지시를 준수하고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5.2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고객 현장 또는 시료가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서비스의 수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고지하고, 시료와 관련하여 또는 회사의 서비스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실제 및 잠재적 보건 및 안전 위험을 회사에 통지하고, 안전한 현장 방문 및 시료 취급에 대한 지시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회사에 제공하는 시료 및 모든 장비에 적절한 안전 라벨을 부착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5.3 고객은 시료에 대한 비파괴 시험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5.4 항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전달한 모든 시료, 기타 재료 및 자산이 서비스의 수행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고객 자산의 파괴 또는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적 손상, 간접 비용 및 손실을 포함하는 모든 추가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4 시험, 분석 또는 기타 서비스 수행 시 회사는 고객의 소유인 모든 자산의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회사에 전달하기에 앞서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고지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자산 자체에 “파괴 또는 손상 금지”라는 문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해당 고지가 이루어지고 고객 자산에 이러한 표시가 된 경우, 고객 자산의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5.4.1 고객 자산의 가액

5.4.2 계약에 따라 손상된 자산에 대하여 수행된 서비스의 비용

#### 6. 재전달

6.1 회사는 고객의 합리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고객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한 후 해당 자산(서비스 수행으로 인해 파괴된 자산은 제외)을 고객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으로 결정한 모든 전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행하고 이렇게 전달된 해당 품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재량에 따라 해당 자산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해당 배송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동 과정에서 손상된 자산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배송업자 또는 기타 개인에게만 직접 해야 합니다.

6.2 고객이 서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회사는 서비스 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고객의 자산을 적절히 처분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는 모든 처분 비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단독 의견상 고객의 자산이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불안정하여 보관 기간을 1 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파기 전 보관 기간은 회사의 절대적 재량권으로 합니다.

## 7. 권원과 보장

회사에 전달된 고객 자산에 대한 권원,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손실 또는 손상 위험(회사가 초래한 손실 또는 손상은 예외이며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책임을 지는 범위로 한정)은 항상 이에 대한 자체 보험 보장을 발효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본 약관을 통하여 회사에 지급할 대금에 보험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고객의 소유로 남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전달된 모든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8. 책임과 면책

8.1 본 8 조는 계약에 대한 모든 위반, 서비스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시료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모든 이용, 그리고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진술, 서술, 불법행위 또는 누락(부주의 또는 법적 의무 위반 포함)에 대하여 회사와 그 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가 고객에게 지는 전적인 금전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8.2 본 약관에 명시되어있고 2.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원 또는 수권서명인이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서면 보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시적 및 암묵적 보증, 조건 및 기타 조항은 법령, 관습법, 관습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암시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계약에서 배제됩니다.

8.3 본 8 조의 나머지 조항에 따라 회사는 불법행위(부주의 또는 법적 의무 위반 포함), 계약, 허위 진술 및 기타 사항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1 이익, 사업, 매출 및 시장의 손실, 제 3 자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영업권 및 유사 손실, 기대수익의 상실, 제품의 상실, 계약의 상실, 이용권의 상실, 데이터 또는 정보의 상실 또는 변질, 임의 지급

8.3.2 모든 특별, 간접 또는 결과적 손실, 비용, 손해, 요금, 벌금, 위약금 또는 경비, 또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

8.4 8.3 및 8.7 항에 따라 고객에 대한 회사의 계약, 불법행위(부주의 또는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 포함), 허위 진술, 배상 또는 계약의 이행(또는 이행 고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 총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i) 8 백만원 또는 (ii) 계약 하에 해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보수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사기 또는 사기성 은폐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계약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적으로 금지되며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8.4.1 고객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2 개월 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된 서비스가 완료된 후 1 년 내에 추정되는 근거를 상세히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8.4.2 회사가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거나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산을 검사하도록 허용된 경우

8.5 고객은 본 8 조의 상기 조항이 합리적이며 해당 조항이 없었다면 더욱 높게 책정되었을 가격에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고객은 이러한 위험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보험에 들도록 합니다.

8.6 고객은 다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하고, 그 면책 상태를 유지하며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8.6.1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한 고객의 모든 법률 위반

8.6.2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서비스 수행의 지연이나 실패로 인하여 제 3 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진행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회사의 잘못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 포함)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청구 대상이 되는 계약 하의 서비스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8.6.3 회사에서 발행한 모든 보고서 또는 계약에 따라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상표권 포함)의 오용 또는 무단 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

본 약관의 기타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책에 있어서 고객의 책임은 무제한으로 합니다.

8.7 본 약관의 그 어떤 내용도 다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8.7.1 부주의로 인하여 초래된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8.7.2 회사의 사기 또는 사기적 허위 서술의 결과로 고객에게 발생한 책임

8.7.3 법률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기타 모든 사안

8.8 본 8 조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 9. 지적재산권

9.1 본 9 조에 적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등록/미등록 여부와 무관한 모든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 실용신안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서비스표, 상호,법인명,도메인명,소유권, 트레이드 드레스권 또는 외장권, 영업권 또는 사칭통용 고소권, 불공정경쟁권, 의장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권리, 데이터베이스 권리, 배치설계권, 저작인격권, 기밀정보(노하우 및 영업비밀 포함)에 대한 권리,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을 의미하며 그러한 권리의 모든 신청, 갱신 또는 연장,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유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모든 보호 권리 또는 형태가 포함됩니다.

9.2 서비스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기록, 과학 문서, 일차 데이터 또는 전자적 데이터 취급 수단에 대한 저작권 포함)은 계약의 일부로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9.3 보고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로 남습니다. 고객이 대금 지불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9.2 항과 본 9.3 항의 조건에 따라 고객은 취소 불가능하고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배타적 보고서 이용 면허(2 차 면허 발급권 포함)를 취득하게 됩니다..

9.4 회사가 보유한 서비스표, 상표, 인증마크, 기타 명칭 및 로고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자산으로 남으며 고객이 판매하거나 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9.5 인증 완료 시 회사는 각 인증건에 따라 발행되고 요청 시 제공되는 약관(수시로 수정)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동안 회사의 인증마크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9.6 고객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고객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 장비 또는 기타 자료의 이용에 있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연루되었다는 제기로 인해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손실로부터 회사를 면책합니다.

9.7 10 조에 명시된 사용권을 제외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에게 상대방의 모든 명칭 또는 마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쌍방은 모든 간행물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명칭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며,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서명 동의 없이는 계약, 서비스 또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식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10. 보고서의 이용

10.1 보고서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하는 기밀정보에 해당합니다.

10.1.1 고객의 내부 요건 충족 및 고객을 위한 회사의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10.1.2 보고서 데이터의 전달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클라이언트 및 기타 제 3 자 요건을 준수하기 위함

- 10.1.3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청구에 대응(단,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 이것인 경우 보고서 작성 전에 회사와 합의가 되어야 함)하기 위함
- 10.1.4 법률 또는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행동 및 대응하기 위함
- 10.2 본 약관에서 고객은 다음을 수행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 10.2.1 10.1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고서(또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10.2.2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완전한 형태의 보고서가 아닌 방식으로 보고서를 복제 또는 제시하는 행위
  - 10.2.3 회사 또는 회사가 소속된 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일 수 있는 진술, 해석 또는 의견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11. 부지**

- 회사의 부지(이하 “**사업장**”)는 지정된 보안구역으로 다음에 해당합니다.
  - 11.1.1 회사는 부지 입장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11.1.2 회사가 사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서비스 참관 요청 시 방문자 입장을 고객당 한 명으로 제한합니다.
  - 11.1.3 사업장 방문객은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11.2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회사가 점유 또는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부지에서 수행되는 경우, 고객은 반드시 관련 보건 및 안전 규제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였거나 회사의 서비스 범위의 일부가 석면의 식별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반드시 모든 석면이 제거되고 회사 인력이 방문하는 모든 부지 구역에 해당 물질이 안전하게 격납되도록 해야 합니다.
- 11.3 견적 및 11.2 항의 조항에 명시된 모든 구체적 고객 의무와 더불어, 서비스가 고객 부지에서 제공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i) 고객 사업장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접근권을 회사에 제공
  - (ii)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
  - (iii) 제공한 부지와 관련된 모든 일반적인 보조 및 운영 자원(가스, 물, 전기, 조명 등 포함)을 제공
  - (iv)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회사에 제공

**12. 법원 및 기타 법적 절차**

- 12.1 고객이 증인 진술, 법원 심리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서 회사가 수행한 서비스의 결과 또는 발견사항을 제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수준으로 해당 발표 및 준비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12.2 고객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고객을 위하여 회사가 수행한 서비스의 결과 또는 발견사항을 제시할 것을 고객이 아닌 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증인 진술 준비, 법원 심리 준비 및 출석을 포함하여 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고객이 계약 대금 잔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고객의 파일을 완료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은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 12.3 서비스의 어떠한 측면 또는 요소(시료 포함)가 법적 절차의 주제이거나 법적 절차와 관련성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절한 단계에서 회사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에 따라 전문가 증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2.4 본 12 조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3. 계약의 종료**

- 본 13 조의 목적에 있어 “**제재규칙**”은 수시로 시행 중인 모든 적용 가능한 무역 또는 경제 제재, 수출통제, 금수조치 또는 유사 법률, 규제, 규칙, 조치, 제한조치, 제한 또는 지정 당사자 목록, 면허, 명령 또는 요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국제연합의 해당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3.1 고객에게 13.2 항에 나열된 사건이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13.2 13.1 항의 목적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2.1 고객이 본 계약 또는 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서면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구제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13.2.2 고객이 명시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3.2.3 고객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부채 상황을 일부라도 중단 또는 유예하거나 지급 기일이 도래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와 자발적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법원이 관장하는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졌고 신청 후 45 일 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 13.2.4 고객의 중요 자산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 처분 등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 이전이나 청산 또는 해체를 결의하는 경우
  - 13.2.5 고객이 사업 영위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13.2.6 회사가 상기 13.2.1~13.2.5 항에 언급된 사건이 하나라도 고객과 관련하여 곧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 13.2.7 서비스 제공 또는 고객과의 거래가 제재규칙 위반이라고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고객이 제재규칙이나 기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회사의 실사 요청을 충족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재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제재규칙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3.3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이자와 함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13.4 계약의 종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더라도 종료 시점 기준으로 축적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 구제조치, 의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3.5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합니다.
- 14.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가뭄, 지진, 기타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병, 전쟁, 무력 충돌, 제재 부과, 금수 조치, 또는 외교관계 단절, 폭동, 사고, 테러, 폭발, 파업, 노동쟁의, 법률, 수출입 제한, 법률 또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할당량 부과, 금지 조치, 필요한 면허 또는 동의의 불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하청업체/공급업체에 의한 자재/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이행, 의무 이행을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 또는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기타 모든 요인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그러한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계약에 따른 회사에 대한 모든 지급 의무는 본 14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15. **준수에 대한 면책**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의 조항에 대한 상대방의 위반을 면책해주는 경우, 이는 해당 조항의 향후 준수에 대한 면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6. 계약의 완전성**

16.1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이전의 모든 합의, 약속, 확약, 보증, 진술 및 양해사항을 대체하고 무효화합니다.

16.2 당사자 쌍방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서술, 진술, 확약 또는 보증(약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 모두 해당)에 대하여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약의 없는 또는 부주의로 인한 허위 진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17. 계약 요소의 개별성**

본 약관의 조항 또는 구제조치가 준거법에 따라 그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인 경우, 그 목적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에서 수정되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에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모든 채무불이행 구제조치를 포함한 본 약관의 나머지 모든 조항은 본 약관의 의도에 따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삭제가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최소 7 일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8. 제휴 또는 대리 금지**

18.1 계약의 그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간에 제휴 또는 합작을 수립하거나, 당사자 일방을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구성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상대방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약속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18.2 당사자 쌍방은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9. 제 3 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1999년 계약(제 3자의 권리)법에 따라 계약의 모든 조건을 집행할 그 어떤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20. 정보의 보호**

본 20 조의 목적에 있어 “정보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정보보호 준거법을 의미합니다.

20.1 본 20 조에서 “처리/처리중/처리된”, “정보처리 담당자”, “정보주체”, “개인정보”, “개인정보 위반”은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 고객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업체 담당자 정보(예: 업체명, 전화번호, 직함, 이메일 주소) 이외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달리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단, 서비스의 제공에 달리 필요한 경우 고객이 이러한 추가 개인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3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보처리 담당자로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0.3.1 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상대방(정보주체)의 적법하고 문서화된 합리적 지시(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뜻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이전, 조정,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러한 공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경우 정보처리 담당자는 처리에 앞서 해당 법적 요건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법에서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이러한 고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그 기간, 유형 및 범위에 있어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오로지 서비스 수행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리고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수집, 처리, 이용됨을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20.3.2 개인정보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b)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합리적 협력 제공

20.3.3 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의무와 관련한 모든 요청, 민원 또는 연락을 받는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주체에 통지합니다.

(b) 본 계약에 따라 정보처리 담당자가 처리하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정보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정보보호법에 따른 평가, 문의, 통지 또는 조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구현하여 정보주체를 지원합니다. 각 경우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 담당자가 20.3.3 항목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보처리 담당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20.3.4 최소한 해당 정보보호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구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0.3.5 개인정보 접근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기밀유지를 약속하거나 적절한 법적 기밀유지 의무를 지고 적용되는 모든 정보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지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20.3.6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영토 안에서만 정보처리 담당자 또는 정보주체가 인가한 하위 처리 담당자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이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국가(이하 “제 3 국”)로의 모든 이전은 정보주체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며, 제 3 국 정보 수출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3.7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하도급업자(이하 “하위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인가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가 하위 처리 담당자의 임명에 동의하는 경우, 이들 하위 처리 담당자는 수시로 정보처리 담당자의 관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정보처리 담당자에 적용되는 정보처리 담당자 및 하위 처리 담당자 간의 계약조건은 그 보호 수준이 본 20 조에 명시된 내용보다 낮지 않습니다. 단, 정보처리 담당자는 이러한 하위 처리 담당자의 신원과 이들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20.3.8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90 일 안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그보다 이른 경우 관계된 서비스를 중단한 후 최대한 빨리(정보주체의 의향에 따라) 개인정보 및 그에 포함된 정보의 모든 사본을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단, 정보처리 담당자가 법적 또는 규제 요건으로 인하여, 또는 인증기관의 요건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20.4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지시를 받은 감사가 수행하는 모든 감사 또는 검토 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기여하여 정보처리 담당자가 본 20 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는 확약을 제공합니다. 단, 언제나 이러한 요건은 정보처리 담당자가 (i) 정보처리 담당자의 내부 가격정책 (ii) 정보처리 담당자의 기타 고객사와 관계된 정보 (iii) 정보처리 담당자의 모든 비공개 외부 보고서 (iv) 정보처리 담당자의 내부 감사 또는 준법 부서에서 작성한 모든 내부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보처리 담당자는 계약에 따라 정보주체가 제공한 지시가 모든 정보처리 준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반드시 이를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21. 하도급**

- 21.1 계약 조건, 인가 또는 준거 승인에 대한 의무에 따라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자격을 가집니다.
- 21.2 회사는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할당하거나, 위임하거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탁할 수 있습니다.
- 21.3 계약은 고객 개인과의 계약으로,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할당하거나, 위임하거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2. 기밀유지**

본 22 조의 목적에 있어 “기밀정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이후에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사업, 제품, 개발, 영업비밀, 노하우나 기타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정보, 당사자의 실제 또는 잠재 고객사, 고객 또는 공급업자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기밀로 지정되었거나 기밀로 간주되어야 합리적인 모든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 22.1 각 당사자(이하 “수신자”)는 상대방(이하 “공개 당사자”)의 모든 기밀정보를 엄격한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수령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접근권을 제공할 수 없으며, 자사 직원, 대리인 또는 임원이 해당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 22.2 22.1 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이 수령한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22.2.1 정부, 지자체, 규제당국, 인증기관 또는 법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단,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준에 한하여 공개)
  - 22.2.2 오로지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적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
  - 22.2.3 공개 당사자의 공개 시점 이전에 수신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인 경우(수신자는 증거 서류를 통해 동일 내용을 증명 가능)
  - 22.2.4 수신자의 계약 위반이 아닌 방식으로 해당 정보가 이후 모두에게 알려진 지식이 된 경우
- 22.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또는 2004 년 환경정보규정에 따라 수신자에게 정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는 공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요청 대상 정보가 공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를 일체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 22.4 본 22 조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3. 수출통제면허**

본 23 조의 목적에 있어 “수출통제면허”는 제품의 판매, 수입, 수출, 재수출, 서비스의 제공, 기술/지적재산권의 이전 자격을 얻기 위해 취득이 수시로 필요한 대한민국, 영국 또는 해외 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발행한 모든 공공 또는 정부 면허, 승인, 허가 또는 유사한 처분(임시 또는 영구)을 의미합니다.

- 23.1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 수행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출통제면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출통제면허에 서명된 최종 사용자 인증서나 대한민국, 영국, 기타 해외 정부 또는 법원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은 이와 관련된 최종 사용자 인증서 또는 기타 승인/동의를 완료하도록 상대방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며 고객은 이러한 최종 사용자 인증서, 수출통제면허 또는 제한조치의 조건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로 약속합니다.
- 23.2 고객은 제품, 정보 또는 기술이 해당 거래가 금지된 국가로부터 또는 그러한 국가에 수출/수입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제공 대상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적용 가능한 수입 또는 수출 제한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고지할 것을 확인하고 약속합니다.
- 23.3 회사는 필요한 수출통제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당사자 쌍방은 수출통제면허의 발행 여부가 관계당국의

단독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필요한 수출통제면허가 지연, 거부 또는 철회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한 수출통제면허가 거부 또는 철회되는 경우 고객과 관련된 책임 없이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할 자격을 가집니다.

**24. 부패방지**

- 24.1 고객은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의 2010 년 뇌물수수법, 미국의 1977 년 해외부패방지법(이하 “반부패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뇌물방지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준거 법률, 법령, 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반부패법에 대한 회사의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생략을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고객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24.1.1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의 반부패 정책(이하 “관련 정책”) 준수
  - 24.1.2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이 받는 모든 유형의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에 대한 요청 또는 요구를 회사에 즉시 보고

**25. 통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등 우편 또는 요금 선불 항공우편을 통해 등록 주소지(해당하지 않을 시 가장 최근에 알려진 상대방의 주소지)로 우송하였고 인편으로 전달된 경우 우송시점으로부터 48 시간 후에 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6. 권리 불포기**

회사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에 대한 그 어떤 미실행 또는 지연도 그에 대한 권리 포기로 작동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적 실행도 동일한 또는 일부 기타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에 대한 추가 실행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7. 준거법**

- 27.1 계약으로 인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비계약적 분쟁 또는 청구 포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27.2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제 1 심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상호 합의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합니다.